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사유

○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조정 등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자문단 구성 인원 및 임기 변경(안 제3조)

○ 인원: 200명 이내 → 250명 이내

○ 임기: 2년 → 2년 이내

나. 분과위원회 설치 변경(안 제6조)

○ 신설: 자치경찰분과위원회, 신성장분과위원회

○ 통합: 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+복지분과위원회=복지·여성분과위원회

○ 분리: 공공혁신분과위원회→공공혁신분과위원회, 재난·소방분과위원회

다. 조례의 유효기한 연장(안 제11조)

○ 2021년 12월 31일까지 → 2026년 7월 31일까지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2011년 설치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와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,
- 도 행정기구 개편 등 도정 여건 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됨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 및 의견

- **안 제3조**는 자문단의 총 위원수를 현행 “200명 이내” 에서 “250명 이내” 로 확대하고, 위원 임기를 현행 “2년” 에서 “2년 이내” 로 개정하려는 것임.
  - 위원수의 확대는 안 제6조에서 분과위원회를 현행 9개 분과에서 11개 분과로 늘림에 따른 조치로 보여짐.
  - 위원 임기 규정과 관련해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제2항에 “자문기관의 위원은~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어, “2년 이내” 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배로 볼 수는 없음.
  - 단, 임기를 “2년 이내” 로 정하는 것은,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당시 위원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재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는 위원 위촉 기간의 불명확성 및 비형평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.
  - 충북도와 유사한 도지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를 제정한 충남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등 타 시·도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  - 이에 위원 임기를 “2년 이내” 로 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필요함.

- **안 제6조**는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중, “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”와 “복지분과위원회”를 “복지·여성분과위원회”로 통합하고,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, “신성장분과위원회”, “재난·소방분과위원회”를 신설하는 것으로,
  - 이는 도 행정기구 개편 및 도정 여건 변화에 따라 원활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
- **안 제11조**는 본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, 이는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  
- **안 부칙 제3조**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, 제6조제1항제3호의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에 한하여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0월 17일까지로 정하고 있음.
  - 이는 기존 도정 정책자문단의 임기가 2021년 10월 17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며,
  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가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 외에도 “신성장분과위원회”, “재난·소방분과위원회”가 있는데,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만 특례 규정을 통해 조례 시행 즉시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.
  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 정책 자문을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의 위원수 확대, 분과위원회 조정 및 추가 신설, 자문단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,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법적, 절차상 문제는 없음.
  - 다만, 앞서 제시한 제3조제3항의 위원 임기 및 부칙 제3조의 “자치경찰분과위원회”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.